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부과취소(경정)결정(기타등록세등)

2012. 6월 수시분으로 과세된 등록세(기타) 및 등록면허세(등록)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하고자 합니다.

### 1. 부과 내역

- 납세의무자 : 주식회사 와\*\*\*\*
- 과세대상 : 2007/08 ~ 2012/02 본점이전 및 자본금증자등기
- 과세사유 : 대도시내 법인등기에 대한 증과세율 적용
- 부과세액 : 등록세(기타)등 총 947,130,890원

### 2. 부과취소 내역: 2012/6수시분650-1~13(등록세기타)/650-2(등록면허세등록)

- 부과취소 사유: 행정소송(2014구합68584) 판결(원고승)에 의거 전액취소
- 부과취소 세액

세 목	당초	취소(경정)	차액	비 고
등 록 세 기 타	793,627,470	793,627,470	0	전액감액
등록면허세(등록)	4,105,350	4,105,350	0	
지 방 교 육 세	149,398,070	149,398,070	0	
합 계	947,130,890	947,130,890	0	

- 첨부서류: 1. 결의결정서. 1부.  
 2. 부과취소내역서. 1부.  
 3. 2012년 6월 수시분 등록세등 내역서. 1부.  
 4. 판결문(2014구합68584) 사본. 1부. 끝.

